

大學教授 國內交流制의 문제점과 개선안

金 南 淳

(朝鮮大·教育學)

이 제도는 大學間 협력과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教授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交流教授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대학교육의 質 향상에 기여할 실천방안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支援이 요청됨을 강조하고 있다.

1. 緒 論

교수 교류프로그램은 學術振興法 제 7조 “학술교류 협력계획”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 1항 “교육부장관은 학술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에 따라 대학간 협력과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대학간 均衡的 發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교수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여 研究意欲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개발·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간 협력, 학술교류, 균형적 발전, 교수의 학문적 발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交流制度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엄격한 자격 조건, “조교수 이상, 최근 5년 이내의 교류근무 경력이 없는 자, 연구결과에 대한 D급 판정 또

는 소정기간내의 보고 미필자”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 후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파견 또는 초빙 교류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지난 1991년도까지 인문계열 193명, 자연계열 70명 등 모두 263명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서울지역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간 學問交流의 바탕을 마련함은 물론, 교수와 대학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이해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大學의 質的 向上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의 풍토가 매우 閉鎖的 이어서 동일한 지역내에서도 대학의 도서관 및 실험실 개방은커녕 인적 교류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낭비요소이고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지역간 교수

교류제도는 깊은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정신을 잘 살려 활용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거두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필자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85년부터 '86년까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의 交流教授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욱 가치롭게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낀 몇 가지 내용을 提言하고자 한다.

2. 大學의 本質과 教授交流 프로그램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시대적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고대의 대학에서는 특권층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했고, 사회계층을 후대에 세습시키는 유일한 과정이기도 했다. 중세에는 “神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상아탑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때로는 직업준비의 최종적인 과정으로 보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각각의 시각들은 물론 선명한 색채를 가진 유일한 본질로만 규정되었다기보다 복합적으로 존재했으며,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본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多重的 性格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오늘날의 대학은 학습(learning)과 교수(teaching)의 주체가 되는 학생과 교수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교수(teaching) 기능과 연구(research), 봉사(service)를 통해서 개인과 국가사회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敎育의 기능은 연구 및 발견된 결과를 교수가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더욱 바람직한 인생관과 인격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지성인으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고 동시에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도록 하는 일이다. 研究의 기능은 미지의 학문세계, 과학·기술·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가치적·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 奉仕의 기능은 연구와 교수활동이 대학 자체뿐 아니라 일반 사회와 국가가 인류 전체의 생활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복지조직이 되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결국 대학은 그 구성원들이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과 지도자적 인격도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자체의 正體를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성원의 역할은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에 터하여 조직·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 개인간의 협조관계는 물론 대학조직간, 대학과 사회조직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그 바탕을 이룰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실행하고 있는 학술진흥법 제7조의 학술교류협력계획과 학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의 대학교원 및 연구요원의 국내교류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을 감안한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며 대학교육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 시행방법과 행정적인 문제점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깊은 논의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3. 大學教授 國內交流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問題點

훌륭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 하더라도 지원방법과 시행절차 및 내용에 따라서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교육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바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학교수의 국내 교류제도가 본래의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고 역기능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先決條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 교류교수 당사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류

교수들의 마음가짐은 보다 새롭고 선진적인 학문의 세계를 탐구하고 대학간·기관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학구적인 자세로 임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교류교수에게는 교류기간중에 한 강좌 이상의 강의 부담(연구소 등 강의가 없는 경우는 강의 부담이 제외됨)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외의 어떠한 부담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교수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접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결국 교류교수의 학문적 연구의욕이 기본적으로 투철할 때, 연구수행에 대한 자세나 교수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 강의는 강의대로 소홀해지고, 연구보고서나 한 편 작성하여 보고한다는 호트러진 자세로 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시간적 낭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 대학교수들과 대학에 좋지 않은 인상까지 남기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처음에는 매우 적극적·의욕적으로 연구와 수업에 임하게 되나 점차 상대 집단으로부터의 무관심, 소속의식의 결여, 교수 및 연구 환경의 부적절 등 많은 문제점이 속출되면서 점차 방관과 나태함이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상대 대학이나 기관이 연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면서 많은 경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때때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요인들과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더욱 구체적·효과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에 임하게 된다면 큰 오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교수 교류제도에 대한 주변인사들의 인식 미흡과 대학당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육성 자세 부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 이해의 정도가 낮고 교수 교류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담스러운 손검' 취급을 함으로써 결국 진정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매우 장애가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학이 직접 일대일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교수에 대해 적절한 각종 편의시설과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과 교류교수 자신의 대학에서는 교류교수에 분담되던 강의나 업무가 결국은 다른 교수에게 전가되거나 추가적인 강사채용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자유로운 학문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고 소기의 목적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로 財政的 支援의 문제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1988년도부터 매년 2억 원 규모의 재원을 책정하여 인문·사회계열은 교수당 250만 원(1992년도부터는 300만 원), 자연·이공계열에는 350만 원(1992년도부터는 400만 원)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아주 빈곤한 교육재정 속에서 이러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스러운 정책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지원금은 사실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지방대학 교수들이 서울소재 대학과 연구소 등에 파견되었을 경우에 드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연구비 지원은 생활 근거지가 현재 근무지 대학이 아닌 교수들로 하여금 대부분 자신의 생활근거지 소재의 대학으로 교류하기를 선호하게 하거나, 개인적인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기회로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

넷째로 大學間 協力體制의 미흡이다.

현재 국내의 몇몇 대학은 협력학교 관계를 맺어 공동관심 학문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 행사 개최, 교수 교환과 편의 제공, 학위과정에서 상대 대학의 교직원 배려 등 매우 적극적·효율적인 협력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학교간의 질적 격차, 교수역량, 교육 시설, 설비 및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물며 협력학교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회원대학이라는 조건으로 파견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편의 제공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이는 단지 상대 대학의 무성의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파견대상 학교에는 강의가 있는 날만 가서 강의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은 적당히 본교의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에 임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상 열거한 몇 가지 문제점 외에도 잡다한 문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나머지 문제들은 기관과 학문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이 될 것이다.

2) 改善方案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기준으로 보다 바람직한 대학교수 국내교류 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소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교류제도의 가치와 발전의 정도는 뛰니뛰니해도 교류교수 당사자의 滿足度에 의해 좌우된다. 더욱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파견교수 자신의 보다 확실한 목표의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안식년제와는 다른 철저한 학문 교류와 대학의 균등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이 부여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소속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파견학교 혹은 기관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상대 기관이나 대학의 교수와 協同研究를 수행하도록 하여 소속감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파견대학에서 강의부담만을 채우는 실정이라면 이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차라리 시작부터 파견대학의 교수와 협동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하고, 특히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경우는 전문영역의 협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 교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環境 조건과 이해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류교수는 결코 스스로 손님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상대 학교에서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일대일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학간 동일 전공교수간 교류,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의 동일 전공자간 일대일 교류는 상호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소속감도 향상될 수 있으며 대리적인 역할수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相互交流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파견된 대학이나 기관 등에서 어떠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 무관심과 소속감의 결여는 커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결과는 상호 괴리감을 낳게 한다. 특정한 학문분야나 특수한 기술·지식이 상호 존재할 때 더욱 큰 의욕이 생기게 되며 상호보완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업적과 학문영역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인식이 사전에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研究計劃과 方向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계획은 연구자 단독의 연구기보다는 파견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교수 또는 연구원들과의 협동연구일 때 서로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대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필요한 經費의 산출이 이뤄져야 하고 이 필요 경비에 합당한 支撥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구경비는 실제 최소한의 경비에 지나지 않는다. 가능하면 더욱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보다 많은 교수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재원 정도라면 그 대상 인원을 훨씬 줄여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파견대학이나 기관의 협동연구자에게도 동일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과정이 이루어져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성패도 財政의 정도가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교류대상 機關과 範圍를 가능하다면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산효과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과 대학, 보다 다양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교류는 물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들도 대학에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연구실에서도 산학협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를 현장에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연구동향과 방법 등에 대해 교수들과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 역시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연구의 동향을 이해하고 현장의 필요를 적절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필요성이 기관장은 물론 교류를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행정적 뒷받침 및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結 論

이상 대학교수의 국내 교류제도에 대하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

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환경에서 매우 바람직한 質的 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며, 이를 위해 관계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이나 기관 그리고 파견교수는 물론 관계 기관들이 지녀야 할 보다 건전한 생각과 이해는 한층 높은 가치와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많은 교수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파견되는 형태 또는 독자적인 연구활동으로 국한하기보다는 相互 交流 그리고 共同研究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본질이 단순한 개인의 연구나 수업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고 상호교류가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목적이 계획·실천될 수 있도록 상호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연구자가 이에 필요한 열정을 가지고 임할 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업체,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학과 당해 기관은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